

제344회 정례회  
2015.12.16.(수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 : 박한범 의원 등 7명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4일
-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5일

## 3. 제정이유

- 충청도 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·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- ※ 도 내 경로당 수 : 4,031개 (2015. 7월 기준)

## 4. 주요내용

- 가.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 운영실태 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5조)
- 나.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(안 제6조)
  - 운영비,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, 봉사활동 및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비 등
- 다.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규정 (안 제7, 8조)
  - 보건복지부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(2012.05.25.)에 따라 대한노인회 위탁
- 라.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개인, 기관 및 단체 포상 규정 (안 제13조)

## 5.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지역 사회 마을 단위의 대표적인 노인 여가·문화 활동 공간으로 건전한 여가 선용과 경제활동, 건강증진 등 지역사회구성원간의 정보교류와 오락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과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음.
  
- 현재 충북에는 2015년 7월 기준으로 4,031개소의 경로당이 있음.
  
- 제정 조례안은
 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지원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법리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됨. 특히,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이 교부된 충북도 내 경로당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.
  
  - 내용 측면에서도
    -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 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이를 시행토록 규정 하였으며,
    - 안 제7조에서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토록 하였고,
    - 안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 하였음. 이는 관련법령인 「노인복지법」의 범위 안에서 충북에서 시행 하고 있거나 필요한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적절하게 규정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- 동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32,127명으로 충청도 전체인구의 14.9%를 차지하고 있는 등, 전국 대비 고령화율이 높은 충북의 특성을 반영하고, 도내 4,031개소의 경로당 운영과 활성화 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 조례 제정에 앞서 해당부서와의 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마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.